##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90 발의연월일: 2025. 6. 10.

발 의 자 : 허 영·박지원·김병기

박 정·장철민·김영환

김태선 • 위성곤 • 전재수

임호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으나 유신 독재 정권 시절인 1973년 10월 10일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당시 명칭은 「군법회의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된 바 있음.

그런데 그 뒤 실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변변한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합참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아 온 것이 현실이며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군 체제라는 한계 때문에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등의 부당함을 겪어 왔던 것으로, 이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옴.

이에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689호),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8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87호)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군"을 "공군·해병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참모총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	제2조(정의)		
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			
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			
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			
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해군· <u>공군</u> (이하 "각군"	<u>공군·해병대</u>		
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관리기관) ① 국방관서의	제6조(관리기관) ①		
장과 각군 <u>참모총장</u> 은 그 소관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한다.	<u>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u>&lt;단서 삭제&gt;</u>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사무를 관리한다.			
1.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등에	<u>&lt;삭 제&gt;</u>		
관한 사무			
2. 대여, 양도 및 교환에 관한	<u>&lt;삭 제&gt;</u>		
<u>사무</u>			
3. 재물조사, 재물조정, 감사에	<u>&lt;삭 제&gt;</u>		

과	카	入	무
י ר	י ר		

- ②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u>참모</u> <u>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u>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 원 또는 다른 국방관서나 군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 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 수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할 수 있다.
- ③ (생 략)

② <u>참모</u>
<u>총장</u>
③ (현행과 같음)